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 선정 규정

제정: 2006. 6. 21.

개정: 2017. 1. 14.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당뇨병학회 (이하 "학회"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지원의 명칭은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이라 한다.

제3조 (지원자격)

본 지원의 대상자는 학회 회원(준회원, 정회원, 평생회원)으로 한정하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1. 국내외 학술대회의 강사, 좌장, 구연 및 포스터 발표자, 토론자

(한 초록당 1저자와 공동저자 1명으로 최대 2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주저자가 참가하지 않는 경우 공동저자 1명만 지원할 수 있다.)

2. 그 외의 자격은 한국제약협회 및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제4조 (지원학회)

국내외 학술대회는 당뇨병과 관련된 국제 학술대회와 국내 학술대회로 한다.

제5조 (선정규정)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지원 가능한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무단 회의에서 초록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결정하며, 그 외에 아래의 우선순위로 선정할 수 있다.

- 연구 목적의 중요성
- 연구 내용의 창의성
- 연구 방법의 타당성
- 발표자 (1저자) 여부
- 구연발표 여부

제6조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에 대한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에 대한 규정은 한국제약협회 및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른다.